추가공제

작성자: 납세자연맹 🔵 2014-10-29

조회: 1,599

트 트위터 🚮 페이스북

즐겨찾기 근주소복사 (현대용복사 본)인쇄



추가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항목으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되었던 자녀와 관련된 자녀양육비공제와 출산·입양자공제, 다자 녀추가공제는 폐지되어 올 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추가공제항목

항목	공제금 액	공제요건				
경로우대공 제	1인당 100만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4.12.31이전 출생)인 경우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고 아래에 해당되는 여성인 경우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단, 한부모공제 받는 경우 부녀자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한부모공제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 소득금액 3,000만원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약 4,147만원에 해당되고 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경로우대공제

①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공제

- 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래 항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최고한도 제한 없음)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소득 제한없고 부모님·수급자 교육비 포함해서 한도 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수급자 사용액 제외)
-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
-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④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 ⑤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
- 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 ->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⑥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 -> 중증환자가 복지카드를 소지하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므로 치료받는 병원, 한의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과는 대상이 달라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 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이면서 계속 근무 중에 있는 경우 수술기간이나 휴직기간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취업 중이면 해당되 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중증환자 판단을 의사가 할 수 밖에 없어 병원에서 장애 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 ☞ 병원에 보내는 공문(장애인증명서 샘플) 보기

부녀자공제

-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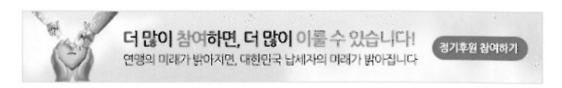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 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 음 : 부녀자 공제대상임

추가공제 받을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환급액은?

과세표준구간	절세율	환급액 (한도: 결정세액)				
파제료단구인	글제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833만원 이하	2.97%	29,700원	59,400원	14,850원	29,700원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62%	46,200원	92,400원	23,100원	46,200원	
1,200만원 초과 ~1,908만원 이하	11.55%	115,500원	231,000원	57,750원	115,500원	
1,908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0%	165,000원	330,000원	82,500원	165,000원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출처: 웹버스 www.webbus.co.kr

웹버스는 웹기획,웹디자인,웹개발,웹기업운영,마케팅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전문 지식 채널입니다

첨부 1.

稅法上 장애인 증빙 발행의 개념과 방법

1.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중풍,치매환자,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건강보험상 중 증진료등록증 발급의 중증환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세법개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는 ①암 ②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③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④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아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관련 세법 내용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호, 삭제 <2001.12.31>
-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3)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한다. (2009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9년까지는 공제되어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기간을 사망전일까지 적어 발급해야 함)

2. 최근 부당하게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 사례

and the same of th		· · · · · · · · · · · · · · · · · · ·
내용	거부이유	부당한 사유
갑상선암 수술. 매일약복용	갑상선암은 해당 안된다	암종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상 중증환 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법상장애인
갑자기쓰러져서 입원중. 움직이 지 못함	6개월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현상황에서 판단.장애 인복지법상 6개월지나서 판단하는 개념과는 다름
할머니 1년 넘게 입원 (다발성열공성뇌경색,퇴행성요추 척추증,골관절염)	소견서를 써준다	명백한 중증환자임. 소견서는 세법상 서식이 아니므로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 요망
전립선암 말기. 병원꾸준히 치료	전립선암은 무조건 해당 안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면 세법상 장애인
90세노모 뇌출혈 쓰러짐 (치매.노인요양판정1급)	잘 모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세 법상 장애인이 명백한 환자임
요양병원입원.호흡안좋고 치매, 거동 안됨	치매는 무조건 안된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환자는 세법상장 애인이 명백함

3.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첫째, 암,중풍,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임.

둘째,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셋째,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등)은 전혀 없고,

넷째, 세법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것은 중증환자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다섯째, 일산암센터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급해주고 있음.

- ☞ 당해년도에 발병. 단기간에 치료된 '갑상선암'도 비영구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일산암센터 홈 페이지 알림마당 '기타공지' 참조)
- ☞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주고 있고, 전화신청을 할 경우에 팩스나 우편으로도 발급해줌

여섯째, 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누락을 이유로 8300건을 납세자연맹을 통해 이미 세무서에서 환급 받음.

4. 협조를 구하는 사항

- 가. 세법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보아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세법 내용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환급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음.
- 나. 귀 병원의 의사들에게 세법내용을 알려 '중증환자' 가족이 세금을 환급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처바람.
- 다. 가급적 환자의 어려움을 감안 적극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해주기 바라고, 이것이 고객 민원감소와 진료수 입 감소 예방에도 도움이 됨

라. 2006~2010년에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병 확진 시점)을 정확히 기재 바람 (끝)

첨부 2.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의료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얼마 전 연맹의 한 회원이 상담을 청했다. 지난 2005년 남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 과거년도 지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연이었다. 그는 3년전 누락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년도 연말정산 다시하기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병원을 방문했지만,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알지 못해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증명서를 떼려고 반나절을 동분서주했지만 초장부터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담당의사에게 "OO병원에서는 잘 떼어 주는데 왜 이 병원만 유독 안 떼어주느냐"며 항의도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 결국 연맹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공제의 개념이 낯선 의료인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죄다 꿰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세금주권(소득공제를 받을 권리)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원성을 사는 일로 연결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는 각각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장애요인별 세부 기준이 있다. 반면 세법에는 장애인 판정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사례별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치료기간, 치료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중증환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이 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점을 감안, 장애인증명서를 적극 발급해줘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선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공제 받는다. 소득공제를 신청 한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맹은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증환자 소득공제 수혜자들이다. 남편의 간이식수술비를 공제받아 368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한 미망인 K씨, 부친의 치료비 1억1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1100만원 환급받은 회원 J씨, 백혈병인자녀의 치료비 1700만원을 공제 받아 450만원을 환급받은 회원 P씨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일 만큼 소중하고 본연의 책무가 있을까. 고단함과 헌신을 통해 시시각각 그 책무를 묵묵히 실천하는 의료인들에게는 그 과정의 기쁨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다 만 가족에게 닥친 암,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환자와 그 가 족에게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그 기쁨에 버금갈 것이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2007.12.13일자 의협신문 10면에 게재된 연맹 김선택 회장의 칼럼입니다)

대한병원협회 공문

"의료선진화 기반 구축의 해"



KHA^{사단} 대 한 병 원 협 회

(직 인 생 략)

121-737 서울 마포구 마포등 35-1 현대 B/D 13F /전화(02)705-9213 /전송 705-9209

문서 번호: 기조 제 2009-16호

일 자: 2009, 1, 1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圣:

선		지	
선결		시	
접	일자	祖	
	시간	제	
宁	번호	•	
	리부	공	
덤	당자	람	

제 목: 연말정산 관련 장에인 증명서 발급 안내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등칙 51-2[항시 치료물 요하는 중중환자의 범위]
-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시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외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 증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력 51-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서 영 제 107 조제 1 항제 4 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범 시행규칙상의 [서식 38]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38). 끝.

대 한 병 원 협 회 장

수신처 : 같, 을



(우)110-062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8번지 썬타워빌딩 501호

http://www.koreatax.org

02)736-1940 교환) 연말정산팀

팩스 02)736-1931

문서번호 : 제2012 - 2호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수 신 : 전국 병원 병원장

(종합병원,개인병원,한의원)

참 조: 원무과장

선 결			XI .	
접	일자		\lambda	
	시간		_ 결	
수	번호		재	
처	리부서		. 공	
담	당 자		람	

제 목 :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의 건

- 1.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 병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 다름 아니옵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귀 병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3.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 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탓에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중병환자로 인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 한 근로소득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4. 귀 병원에서 이런 내용을 헤아려 중증환자 관련자(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실 것을 긴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5. 본 요청의 근거 법령과 세부 처리방법 등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세법(稅法)상 장애인 증빙 발행의 개념과 방법
 - 2) 의사협회칼럼(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 3) 대한병원협회 공문
 - 4) 장애인증명서 서식 작성 예(영구, 비영구)
 - 5) 장애인증명서 서식(빈양식)
 - 6) 장애인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직인생략

장애인 증명서 작성예

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작성 예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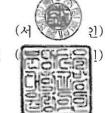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분당서울대병원	②사업자등록번호	<u>5</u> 1 2 9 - 8 2 - 0 6 9 8 9						
③ 대표자(성 명)	강 흥 식								
④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구미동 300번	기 분당서울대병원						
2. 소득자 (또는 증	등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김 영 희	⑥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⑦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번지							
3. 장애인	3. 장애인								
⑧성 명	김 철 수	⑨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⑩소득자와의 관계	김영희 의 부 (1)장애예상기간 □영구 (2011 · 1 · 3 ·부터) (또는 장애기간) □비영구(· · ·부터 · · ·까지)								
¹² 장 애 내 용	제 3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2 년 1 월 15 일

 진 료 자
 이 영 수

 발 행 자
 분당서울대병원



귀 하

- ※ 작성방법: ②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작성예[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4.30>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2 호 분당서울대병원 ②사업자등록번호 1 9 - 8 0 6 ③ 대표자(성 명) 강 흥 식 ④ 소 재 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 분당서울대병원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ठ ⑦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번지 3. 장애인 ⑧성 명 김 철 수 9주민등록번호 11장애예상기간 □영구 (. . .부터) 10소득자와의 관계 김영희 의 부 (또는 장애기간) ⊠비영구(2005.04.15.부터 2012.11. 03.까지) ① 장 애 내 용 제 3 호 13 8 소득공제 신청용 F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2 년 1 월 15 일

진 료 자 이 영 수 발 행 자 분당서울대병원



귀 하

- ※ 작성방법: ②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별지 제38호서식]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 명)							
④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	등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3. 장애인	**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영구 □비영구(부터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호	③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 자임을 증명합니다		항제2호 및 동법 시호	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년 월	일				
		진 5	로 자 (서명 또는 인)				
		발형	생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방법 : ⑫장	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힘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위	Ó		장
(대리	101	시청	성용)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위임하는 사람 (환 자)	전 화	화 번 호	회사	집	핸드폰				
	7	U.S.		; *					
위 환자는 이	위 환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를 위임합니다	구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환지	/)	서 명 또는 (인)				
(※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받은사람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또는 민원인	환자	와의		전 화 번 호					

	민 원	서 투	루의 종	류		매수	발급반	호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①장	애	인	증	명	서			1710 120 2	
27	2				타				
제	출	처	세무서				용	도	연말정산용

1. 환자 생존시

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류 ④ 환자 및 본인 신분증

2. 환자 사망시

①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빙서류 ③ 대리인 신분증

210mm×297mm (신문용지 54g/㎡)